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85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김위상·박충권·김선교

임이자 · 김형동 · 김성원

김승수 · 주호영 · 박성민

서범수 · 강선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은 해당 기능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설립 · 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법률 제 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 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임용한다.

- 1.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 2. 학장 외의 교원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제52조 중 "법에"를 "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44조(교원 등의 임용・정년・ 제44조(교원 등의 임용・정년・ 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 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 인력공단법____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 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임용한다.

② ~ ④ (생 략)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 정 아

복무 등) -----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 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 학의 교원은 그 특성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 다.

- 1.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 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 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 2. 학장 외의 교원은 해당 기능 대학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 이 임용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설 립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